

[일련번호 : 1]

# 경기도체육회

## 주의조치

[제 목]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

[소 속 기 관] 경기도보디빌딩협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경기도보디빌딩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경기도보디빌딩협회 규약」(이하 “규약”이라 한다.)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, 경기도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 「정관」 및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에 따라 규약 및 기타규정을 절차에 맞게 의결하여 제·개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「규약」 제50조(사무국 운영 등), 제52조(규정변경), 제53조(규정 제·개정 등)에 따라 협회는 본회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을 참고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및 총회 의결 등을 거쳐 규정 제·개정을 해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그런데 협회는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었다.

### 가. 협회 「규약」 관리 미흡

협회는 본회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 제53조(규약 등 제정·개정) 제1항에 따라, 본회 각종 규정을 참고하여 협회 「규약」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그러나 협회는 20\*\*년 \*\*월 개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 개정을 진행하지 않고 20\*\*년도에 개정된 규약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.

### 나. 기타규정 관리 미흡

협회는 ◇◇◇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위원회 규정 제정없이 운영하고 있어 향후 행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.

또한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보디빌딩협회는 총 32개의 기타규정이 존재하며 종목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규정이 존재하나 협회는 기타 규정 제정없이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.

### [조 치 사 항] 경기도보디빌딩협회장은

협회 「규약」 및 본회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에 따라 규약을 최신화하고 기타규정은 운영을 검토하여 필요한 규정은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일련번호 : 2]

# 경기도체육회

## 주의조치

[제 목] 회계처리 부적정

[소 속 기 관] 경기도보디빌딩협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경기도보디빌딩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은 조직 운영,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협회 「규약」, 경기도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」에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. 협회 행정의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은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본회 「회계규정」 제2조(적용)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「공익법인회계기준」을 정한다고 되어있다.

협회는 모든 예산 집행 시 본회 「회계규정」 제42조(지출원인행위)<sup>1)</sup>, 제43조(지출원인행위의 위임)<sup>2)</sup> 및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11조(지방보조금 사용 방법) 제5항<sup>3)</sup>에 따라,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

1) 제42조(지출원인행위)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,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③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
2) 제43조(지출원인행위의 위임) ①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소관부서에 설치된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.

3) 제11조(지방보조금 사용방법)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,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달성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를 통해 집행의사를 결정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결의를 통해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협회는 모든 예산 집행 시 집행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여야 하나, 각종 사업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, 20\*\*년도 ◆◆◆◆사업에서만 지출품의와 지출결의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회계·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
#### [조치사항] 경기보디빌딩협회장은

협회의 각종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에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지출품의에 따른 회계 지출 증빙서류(전자세금계산서 등)를 관리하여 집행하는 등 집행절차와 회계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.